

[별지 제75호서식] <개정 2023. 5. 25.>

제 호		
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		
이 른 자 동 차 번 호		
소 유 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적발사실	일 시	
	장 소	
정비하여야 할 사항		
정 비 이 행 기 간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인 ○위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 정비명령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○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

33331-31111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